〈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u>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20160567 최초등록일 : 2016.06.17

최종득록일 : 2024.12.10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정 보 공 개 서**

[엔씨엔터(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2024. 04. [엔씨엔터(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유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87, 제비동 1210호(양재동,삼호물산빌딩)]

[02-589-0070]

[영업부02-589-007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기	지		주 소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87,제비동1210호(양재동 삼호물산빌딩)				
엔씨엔터(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인에 앤디(구)	2014.09.30		2014.10.20	이미경 02-589-0070 02-589		02-589-0070	
	법인등록번호	134	511-0243440	사업자등록번호		호 142-81-7816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이미경	المحاد الماسية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형	현로87,제비동1210호(양재	동 삼호물산빌딩)		
본인	엔씨엔터(주)	슈퍼스타코인 : 노래연습장 -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이 미 경	02-589-0070	02-589-00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강 현 국	슈퍼스타코인 노래연습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형	현로87,제비동1210호(양재	동 삼호물산빌딩)		
배우자	엔씨엔터(주) 이사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 미 경	02-589-0070	02-589-0070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상 호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OO점	
상표(서비스표)	슈퍼스타 코인노레연습장	서비스표 출원번호: 41-2015-056104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23,953	471,616	-347,663	233,094	988	3,568
2022년	133,155	473,696	-340,540	397,420	6,514	7,121
2023년	106,785	488,526	-381,740	204,782	-41,184	-41,199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기시H	a) =	구) 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14.09.30~	대표이사	총괄			
	이미경	대표이사	현재					
가맹사업								
관련 임원	강현국	1국 이사	2014.09.30~	이사	영업			
	성연곡		현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4천구(당)
2022년 12월 31일	2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엔씨엔터(주)	가맹사업 경영	2014.9.30~현재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등록번호: 제41-0376477호) 이라는 영업표지의 노래연 습장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슈퍼스타코인 노래연습장	상표권	2015.11.24. 출원	출원번호 제41-2015-0056102 등록번호 제41-0376477호	이미경	2025.11.23
슈퍼스타코인 노래방	상표권	2015.11.24. 출원	출원번호 제41-2015-0056104 등록번호 제41-0367447호	이미경	2025.11.2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 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사업 현황

1.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을 시작한 날: 2014년 09월 3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엔씨엔터(주)	슈퍼스타코인 노래연습장	이미경	2014.09.30 ~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87,제비동1210호(양 재동 삼호물산빌딩)

3. [**엔씨엔터 주식회사**] 업종

영업표지	업종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오락	노래연습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9	39		39	39	_	38	38	_
서울	17	17		18	18		18	18	_
부산				_	_			_	_
대구				_				_	_
인천	1	1		1	1		1	1	_
광주									_
대전	1	1		1	1		1	1	
울산				·				_	_
경기	11	11		11	11	_	10	10	_

강원			-	-	-	_	-	-
충북			_	_	_	_	_	_
충남	2	2	2	2	_	2	2	_
전북	4	4	4	4	_	4	4	_
전남					_			_
경북	1	1			-			-
경남	2	2	2	2	_	2	2	_
제주			ı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39		1			38
2022	39	2	2	_	_	39
2021	52		13			39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①	가맹	점/직영점의	수 ^②
十七	['경오/ 이급 	정답표시	등록번호	में ठ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 '	당사항 없음	<u>)</u>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일 가맹점수	그 기계 기계 가면 접사업 사의 역간 평균 매숙액	비고 ^⑤
--------------------------------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¹ 매출액(연간 ³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38	해당없음						
서울	18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10	해당없음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2	해당없음						
전북	4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2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8.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 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²
2023	38	2,31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상호/명칭 [©] 주 소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해당없음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³	지출 비용	용(단위: 천원 미포함)], 부가세	비고 ^④
	, ,	7 C	합계 가맹본부 가명		가맹점	
합계						
광고			해당사	항 없음		
판촉						

10.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 예치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해당사항 없음	
보장범위		
지급조건		
보험금의 수령절차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 ^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가입비					
교육비			해당사항 없음		
개점행사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총계				
(현금)보증금		सी टो	사항 없음	
담보목적물		ભા જ	'^r 영 없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가입비	
교육비	해당사항 없음
개점 행사비	
(현금)보증금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워, 부가세포함)

					인TI· 센턴,	
구분 ^①	지급대상 ²	금액 [®]	면적 3.3㎡당 금액 [®]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⑤
총계		[70,000~80,000]				40평/20룸 기준
영상 및 음향시설	협력업체	70,000(보통형) 80,000(고급형)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별도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해당없음					
실내사인 및 간판		별도부담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납부일	해당사항 없음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교 ^④
영업표지 사용료	협력업체	월 200 /20룸기준 (부가세 별도)	매 월 23일			반주기당11 (부가세 포함)
지연이자 ⁶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① 물품 목록 : 신곡업데이트

② 거래형태 : 반주기 1대당 2.2만원(부가세 포함)씩 매월 지급

- ③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④			레디지침 어ㅇ		
점포 이전비 ^⑤			해당사항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엔씨엔터(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 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 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처워

수 버	프 모 (디디)	공급	구분®	
一 七 也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丁七
1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해당없음				
	계 계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그 액 ^③	비고 ^④
해당없음					

귀	
/1	
l ·	

2) 당사가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금액 ³	비고 ^④
해당없음					
:	:	:	:	:	
		계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 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상품 · 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건 ^②	위반시 책임 ^③	비고 ^④
해당없음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청소년	출입	22:00~09:00까지 출입제한	행정처분/형사처벌	
전고객	주류	판매금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①	권장가격(단위: 원) ²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노래연습장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3km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1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독이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당사항 없음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영업표지	취급품목2	가맹점과의 구분 [®]		
가맹점					
대리점	해당없음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유통업체명 ^②	주소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④
온라인		حال r	1.61.6	
홈쇼핑		ं। र	당없음	
전화권유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해당없음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3조 2항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 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3조 2항2호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 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23조 2항3호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	23조 2항4호
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3조 2항5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한 경우	24조1항1호
○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맹계약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4조1항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 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4조2항1호
Ó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24조2항2호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4조2항3호
7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 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 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	제24조2항4호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레이4구 0취 [구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제24조2항5호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게04 フ 0청/C국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제24조2항6호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	
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	-1)04705175
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제24조2항7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4조2항8호
┗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제24조2항9호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4조2항10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신곡업데이트비의 경우 공급처의 공급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16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

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②	환매 절차 ^③	비고 ^④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2-589-007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 합니다.

구분 ^①	가능 여부(조건) ²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_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해당없음	
	애당ᆹ금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10시부터오후12시까지 (1일14시간)	1년 365일	계약시 별도 협의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²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④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	부딩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下世 [*]	성격 ^②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한담 설사	117
	상품광고				
3 -7	상품광고				
광고	+가맹점				
전체 행사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할인행사			해당사항 없음	
판촉행사	증정행사				
	팜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 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60일 내외	[10p참조]
사업 설명	- 정보공개서 제공/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9~58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4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2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0(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9~7(32일)	
소방완비 및 구청등록	- 소방 점검 및 구청등록신청	D-7~1(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

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²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³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인테리 장비, 등의 객관적 어 등의 객관적 이 한 그 경우 이 전의 인하의 어렵지 점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용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환경개선 40%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 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 례하는 부담 액은 지급하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에 기정근무 부담액을 지		
			급		
			-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거 코 기메보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 담 액 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		
			시 시합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ㅇ점포의 시설, ㅇ	간판교체비용	ㅇ가맹점사업자			
	인테리어 공	의 투자금액			
	사비용(장비·	(임차료 등),			
	집기의 교체	월평균 매출			
	비용을 제외	액 등을 고려 하여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 야역 -점포의 확장			
	ㅇ^^^에 '오죠 되는 일체의	도는 이전을	"	"	
		수반하지 않는			
	·	점포환경개선			
		·			
하기 어렵거	하게 가맹점	-점포의 확장			
	사업자가 추	또는 이전을			
	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5			
한 지장을 주					

는 경우	소요되는 비	0~80%		
	용은 제외)	-단, 집기·장비		
	ㅇ집기·장비교	교체비용은		
	체비용	20% 부담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	행사 시 인덕시원 주요 내용 ^②	3 내구 지원조건 ³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
개점행사비	1 22 110	7,646	114714	. 1 . 1 . 1	1,22
판촉장려금					
판촉지원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사	항 없음		
반품지원					
마일리지					

CRM		
테스터		
	-	

- ①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작성하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② 가맹희망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④ 정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40평/20룸 기준)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형 태	거래 조건
리스계약	금융기관/ 제이시현씨스템 (주)	100,000	운용리스	리스계약서
신용대출	금융기관	100,000	신용대출	양도담보계약서/ 대출계약서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589-0070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제반 비용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①	기한	비고 ^②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향기기 조정 및 부품교체 기기 운영 방법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일전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시간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닺	· 사느 진연전은 -	우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0	71C 70DE 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사항 없	것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2-552-41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superstarcoin.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 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